

부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62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628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3326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이유선

변론 종결 2021. 7. 7.

판결 선고 2021. 8.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3326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외 C(D생)과 피고 사이에 2018. 5.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주식회사 E이 C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C을 상대로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9.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전15955호로 '11,940,074원 및 그중 5,360,869원에 대하여 201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5.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2020. 7. 24. 기준으로 원고의 위 양수금의 원리금은 합계 31,503,376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이다.

나. 위 C의 어머니인 F은 2017. 12. 15. 사망하였고, F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의 자매인 피고에게 2018. 5. 21.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제13523호로 2017.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들인 H, C, 피고가 있었다.

다.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은 2018.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은 채무자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인바,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8. 5.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마쳐진 2018. 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최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C이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소극재산,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재산분할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부양의무 이행, 대위변제1)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C에

대한 상속지분을 사실상 시가와 비슷하게 매수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피고의 견해대로 이를 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8. 5. 21.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신민석

판사양우창

별지

1) 피고는 2019. 6. 28. 주식회사 M에 C의 채무 8,95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